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업고충민원팀 및 운전심판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심판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패영향분석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28. ~ 11.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시수자원민원과·교통도로민원과 및 기업고충민원팀을”을 “도시수자원민원과 및 교통도로민원과를”으로, “기술서기관으로, 기업고충민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4항 중 “사회복지심판과·환경문화심판과 및 운전심판팀을”을 “사회복지심판과 및 환경문화심판과를”으로, “기술서기관으로, 운전심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의2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경찰청(「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3제3항제11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3명)”을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토해양심판과장”을 “부패영향분석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88”을 “487”로 하고, 일반직 계 “480”을 “479”로 하며, 행정주사 “3”을 “2”로 한다.

총리령 제142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총리령 제165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고충처리국) ① ~ ③ (생략)	제7조(고충처리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충처리국에 민원조사기획과·행정문화교육민원과·국방보훈민원과·경찰민원과·재정세무민원과·복지노동민원과·산업농림환경민원과·주택건축민원과·도시수자원민원과·교통도로민원과 및 기업고충민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업고충민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 ----- ----- -----도시수자원민원과 및 교통도로민원과를 ----- ----- 기술서기관----- -----.
⑤ ~ ⑭ (생략)	⑤ ~ ⑭ (현행과 같음)
⑮ 기업고충민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8호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접	

견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 민원 안내·상담 지원 제8조(행정심판국) ① ~ ③ (생략) ④ 행정심판국에 행정심판총괄과·행정교육심판과·재정경제심판과·국토해양심판과·<u>사회복지심판과</u>·<u>환경문화심판과</u> 및 <u>운전심판팀</u>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u>기술서기관</u>으로, <u>운전심판팀장</u>은 <u>서기관</u>·<u>기술서기관</u> 또는 <u>행정사무관</u>으로 보한다. ⑤ 행정심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3의2. 국 내 다른 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관한 문서(답변서를 포함한다)의 <u>수발</u>·통제·보존 및 관리 4. ~ 12. (생략) ⑥ 행정교육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8조(행정심판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사회</u> <u>복지심판과</u> 및 <u>환경문화심판과</u> 를 ----- ----- <u>기술서기관</u>-----. ⑤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 ----- <u>접수·발송</u>----- ----- 4. ~ 12. (현행과 같음) ⑥ ----- -----. 1. -----	·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법제처·병무청·방위사업청·<u>경찰청</u>(「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소방청,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 소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행정기관으로서의 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3. (생략) 4.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관한 문서(답변서를 포함한다)의 <u>수발</u>·통제·보존 및 관리 ⑦ ~ ⑩ (생략) ⑪ <u>운전심판팀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	----- ----- ----- -----<u>경찰청</u>----- ----- ----- ----- ----- ----- ----- ----- ----- ----- ----- ----- 2.·3. (현행과 같음) 4. ----- ----- ----- <u>접수·발송</u>----- ----- ⑦ ~ ⑩ (현행과 같음) <삭 제>
--	--	---	--

<u>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u>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9조의3(청렴연수원) ①·② (생략)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및 관리 12. ~ 17. (생략) ④ (생략)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제9조의3(청렴연수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접수·발송</u>----- ----- 12. ~ 1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제1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법무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및 <u>국토해양심판과</u>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생략) 총리령 제142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	----- ----- ----- ----- ----- -----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부패영향분석과장</u>----- -----. ③ (현행과 같음) 총리령 제142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	---	--	--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업고충민원팀 및 운전심판팀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기업고충민원팀장 및 운전심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및 행정교육심판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원 1명(행정주사 1명)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총리령 제165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65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총리령 제142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된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	<삭 제>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8</u>		<u>487</u>	-1	
		•	•		•		
		•	•		•		
일	반	직	<u>480</u>		<u>479</u>	-1	
		•	•		•		
		•	•		•		
행	정	주	<u>3</u>		<u>2</u>	-1	
		사	•		•		
		•	•		•		